

(별표) 전임교원 연간 책임학점

구 분	세부구분	책임학점			타교출강 최고시간	비 고
		연간 의무강의	학부 의무강의	학기별 최소담당		
보직 교수	교무위원	6	3	0	6	
	전문대학원장, 특수대학원장, 부학장, 학사과정의 학과장, 부속기관장, 부설교육기관장, 성대신문사주간, 성균타임즈사주간, 성대방송국주간	12	9	3	6	
일반 교수	일반교수	15	9	3	8	
	정년퇴직전 2개학기 해당교수	6	3	0	8	
	신임교원(1년차)	9	3	3		
	신임교원(2~4년차)	12	6	3		
*전담 교원	교육전담교원(Ⅰ형)	24	18	9		교육전담
	교육전담교원(Ⅱ형)	21	15	6		
	교육전담교원(Ⅲ형)	18	12	6		교육전담/실무형 교육전담
	교육전담교원(Ⅳ형)	15	9	3		실무형 교육전담
	교육전담교원(Ⅴ형)	12	9	3		
	연구전담교원	6	3	3		
	산학협력전담교원	(9)	(3)	(3)		()이내에서 따로정함

- 주1. '학부의무강의'는 별표를 원칙으로 하고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
- 주2. '학부의무강의'는 연간책임학점 범위에서 책임학점별로 9학점(연간의무강의 12학점 이상인 경우), 6학점(9학점 이상인 경우), 3학점(6학점 이상인 경우)으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. 단, 임용연차에 따라 3학점(1년차), 6학점(2~4년차)으로 부과함
- 주3. 삭제
- 주4. 삭제
- 주5. 전담교원은 전담영역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전임교원을 의미하며, 별도 계약에 의거 책임학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
- 주6. 교육전담교원은 소속 대학/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(별표)와 같이 연간 책임학점(유형별 별도 급여)을 선택할 수 있음
- 주7. 삭제
- 주8. 「학칙시행세칙」 제39조에 따른 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을 강의하는 경우, 해당 학점은 당해 학년도 2학기 담당학점으로 인정함